

제 안 설 명 서

[소백산풍기온천장 및 부대시설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영 주 시

소백산풍기온천장 및 부대시설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

의안 번호	224
----------	-----

제출년월일 : 2001. 11. .

제출자 : 영주시장

I. 제안이유

- 소백산풍기온천장 및 부대시설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을 심의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II. 주요골자

- 건축명 : 풍기온천장 및 부대시설 증축
- 건축 규모 : 1,748m²
(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 1,160m², 금회 : 588m²)
 - 당초(온천장) : 1,160m²
 - 금회 증축 : 588m²(온천장 198m², 부대시설 390m²)
- 소요사업비 : 250백만원 정도

III.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서(총괄표) : 별첨

IV.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관리계획)
-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온천장 및 부대시설 증축 사업계획

- 위치 : 풍기읍 창락리 169번지 일대(풍기온천장 부지내)
- 시설용도 : 온천장 및 부대시설
- 사업규모
 - 온천장 증축 : 198m'(온천탕 진입 복도부분 덮개설치)
 - 부대시설 건립 : 390m'
 - 소요사업비 : 250백만원 정도
 - 공사기간 : 2001. 12 ~ 2002. 2.
- 온천장 및 부대시설 증축 구상

구 분	시 설 내 용	면적(m ²)	비 고
온 천 장	온천탕 진입복도 부분 덮개설치	198	온천탕 진입 복도부분에 지붕 및 벽체를 설치하여 온천이용객들에게 편의 제공
부대시설	사무실, 식당, 특판장, 야외화장실, 휴게실 등	390	
합 계	합 계	588	

○ 회계명 : 일반회계
2001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서(총괄표)

(단위 : m², 천 원)

구 분		기 의 결			금 회			합 계			비 고
구	분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285	40,976.00 8,466.59	537,488 16,522.288	1	588	250,000	286	40,976.00 9,054.59	537,488 16,802,288	
2. 교환	토지 건물 기타	1	493.00	300,730 20,288				27	40,483.00	236,718	
3. 기탁	토지 건물 기타	4	8,251.30	16,502,000	1	588	250,000	5	493.00 215.29	300,730 20,288	
부											
1. 매각	토지 건물 기타	3	3,981.00	1,496,898 426.96				31	3,981.00 426.96	1,496,898 50,562	
2. 양여	토지 건물 기타	2	2,791.00	1,326,728				2	2,791.00	1,326,728	
3. 교환	토지 건물 기타	1	1,190.00 426.96	170,170 50,562				11	1,190.00 426.96	170,170 50,5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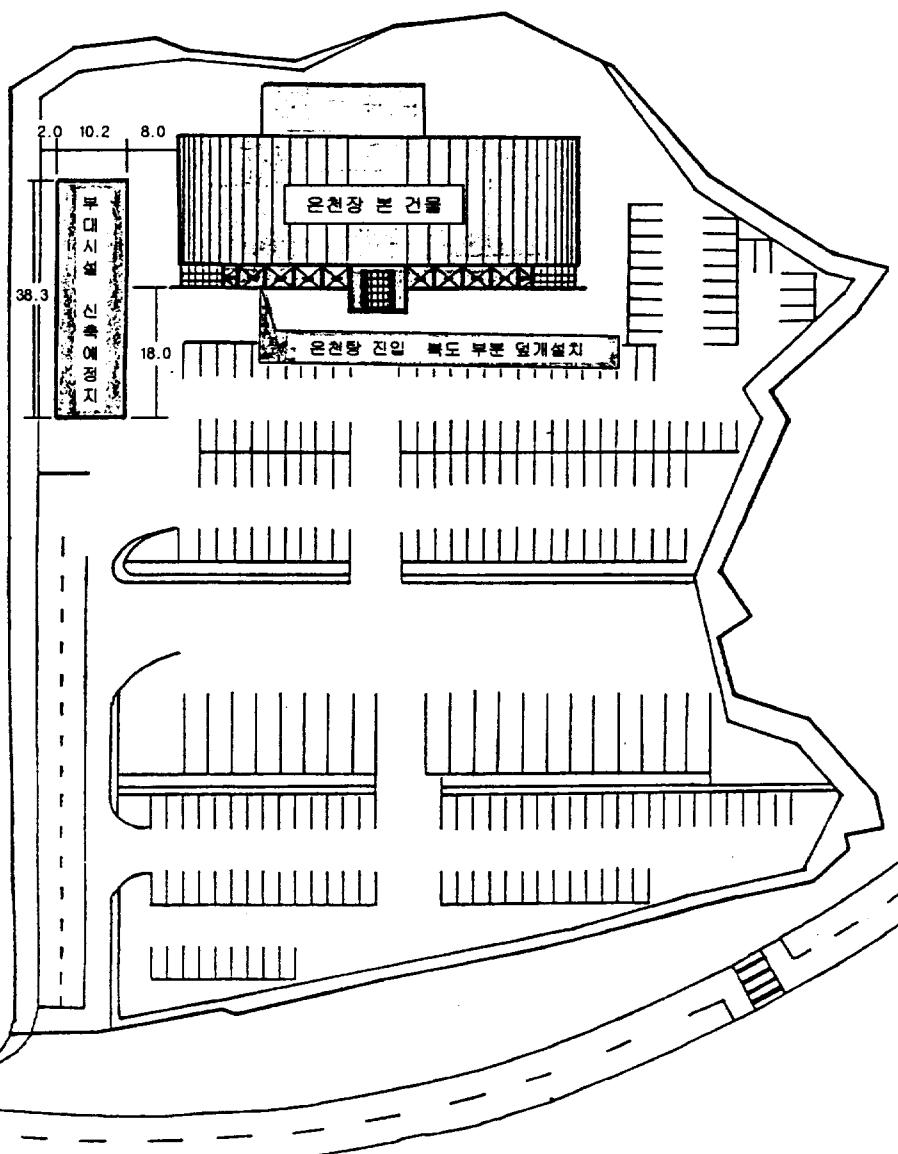
취득자산목록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 원)

구 분	재산의 표시		추정가격 (소요사업비)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 고
	소재지	수량 규모				
계		538 (178평)	250,000			
건물 (풍기온천장)	풍기읍 창락리 169번지 일원 (온천장단지내)	198 (60평)	50,000	2001	풍기온천장 증축	당초: 1,160m ² 증축: 198m ² 합계: 1,358m ²
건물 (부대시설)	풍기읍 창락리 169번지 일원 (온천장단지내)	390 (118평)	200,000	2002	풍기온천장 부대시설건립	

온천장 및 부대시설 증축 평면도



풍기온천시 옥장부대시설건립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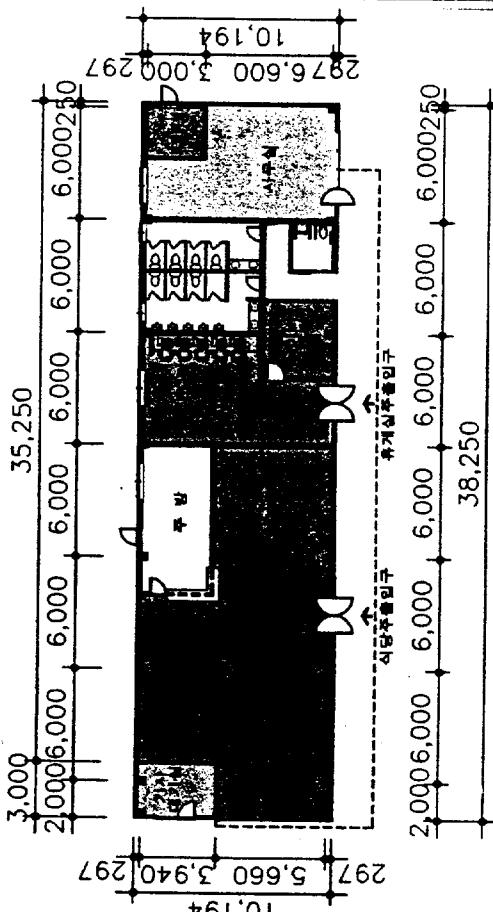
축척=1:100

■ 실별 면적 표

단위:M2(평)

구 分	설 명	면적
식당부분	식당	122.21(36.97)
	주방	31.18(9.43)
	복판장	37.78(11.43)
	소계	184.78(55.90)
휴게부분	휴게실(PC방포함)	51.81(15.67)
	사이버노래방	16.37(4.95)
	기시대기실	12.71(3.84)
	소계	80.89(24.47)
관리부분	사무실	63.88(18.33)
	소계	63.88(18.33)
공용부분	화장실(남)	20.78(6.28)
	화장실(여)	21.05(6.37)
	화장실(장애인)	6.47(1.96)
	복도	5.85(1.77)
	보일러실	9.73(2.94)
	소계	63.88(19.32)
합계		386.92(117.95)

■ 1층 평면도



■ 정면도



B 주

Y

第4章 地方財政·地籍

第1節 地方財政

●地方財政法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全文改正 1988. 4. 6 法律第4006號
 改正 1990. 12. 27 法律第4268號(政府組織法)
 1991. 12. 31 法律第4466號
 1994. 12. 22 法律第4795號
 1995. 1. 5 法律第4868號(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관한法律)
 1997. 12. 13 法律第5454號(政府部處名稱등의변경에따른施政法등의整備에관한法律)
 1999. 1. 21 法律第5647號
 1999. 5. 24 法律第5982號(政府組織法)
 1999. 8. 31 法律第6002號(地方自治法)
 1999. 8. 31 法律第6010號
 2000. 1. 12 法律第6113號
 2001. 1. 29 法律第6400號(政府組織法)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법은 地方自治團體의 財政 및 會計에 관한 기본原則을 정하여 地方財政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 (財政運營의 基本原則) ①地方自治團體는 그 財政을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國家의 政策에 반하거나 國家 또는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財政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行政自治部長官은 地方財政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號의 사항을 研究·開發하여 施行하여야 한다. <新設 94. 12. 22, 99. 1. 21>

1. 합리적·효율적인 豊算管理技法
2. 地方財政運營狀況의 測定技法
3. 기타 國家의 實효성 있는 地方財政支援方案

第3條 (會計年度 獨立의 원칙) ①各 會計年度의 經費는 당해年度의 歲入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당해年度내의 收入으로 經費를 충당함에 있어서 부족이 생긴 때에는 다음 年度의 收入을 앞당기어 이에 충당·사용(이하 “繙上充用”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繙上充用을 한 금액은 다음 年度의 歲入歲出豫算에 编入하여야 한다.

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繙上充用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어야 하며, 繙上充用을 한 때에는 市·郡 및 地方自治團體인 區(이하 “自治區”라 한다)에 있어서는 特別市長·廣城市長 및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特別市·廣城市 및 道(이하 “市·道”라 한다)에

(주 128)

第10編 地方制度 第4章 地方財政・地籍 地方財政法

第76條 (公簿登録 등) ① 公有財産을 취득하거나 寄附採納을 받은 때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登記·登錄 기타 權利保全에 필요한 節次를 취하여야 한다.

② 不動產 기타 權利에 관한 公有財產으로서 登記 또는 公簿에 登錄을 요하는 公有財產의 權利者名義는 당해 地方自治團體로 한다. 다만, 教育費特別會計 소관의 公有財產은 “教育監”으로 그 所管廳의 名稱을 添記하여야 한다. <改正 94·12·22>

第77條 (公有財產의 管理計劃)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算算을 編成하기 전에 매년 公有財產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計劃(이하 “管理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② 第1項의 管理計劃에 포함하여야 할 公有財產의 범위 및 管理計劃의 작성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1·21>

③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管理計劃에 따라 公有財產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하며, 그 취득 및 처분결과를 審査·分析하여야 한다.

④ 刪除 <99·1·21>

(全文改正 94·12·22)

第78條 (公有財產審議會) ① 公有財產의 取得·管理 및 處分에 관한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諸間에 용하게 하기 위하여 各 地方自治團體에 公有財產審議會를 둔다.

② 第1項의 公有財產審議會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第79條 (公有財產에 관한 法令案의 協議)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公有財產의 管理와 處分에 관련되는 法令을 制定 또는 改廢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行政自治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9·1·21>

第80條 (財產管理官등의 행위제한) ① 財產管理官 기타 公有財產에 관한 事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은 그 처리하는 公有財產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所有財產과 交換하지 못한다. 다만,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許可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第1項의 規定에 違背되는 행위는 이를 無效로 한다.

第81條 (會計間의 財產移管) 地方自治團體의 各 會計중 1會計에 속하는 財產을 다른 會計의 財產으로 移管할 때에는 이를 有償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公公用 또는 公用에 사용하기 위하여 移管하는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 公有財產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이를 無償으로 할 수 있다. <改正 94·12·22>

第82條 (行政財產 및 保存財產의 管理 및 處分) ① 行政財產 및 保存財產은 이를 貸付·賣却·交換·讓與·信託 또는 代物辨濟하거나 出資의 目的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私權을 設定할 수 없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1·21>

1. 그 用途 또는 目的에 障害가 없는 한도내에서 사용 또는 收益을 許可하는 경

(주 104)

第2章 地方自治

第1節 通 則

●地方自治法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全文改正	1988. 4. 6	法律第4004號
改正	1989. 12. 30	法律第4162號
	1990. 12. 31	法律第4310號
	1991. 5. 23	法律第4367號
	1991. 12. 31	法律第4464號
	1994. 3. 16	法律第4741號
	1994. 12. 20	法律第4789號
	1995. 1. 5	法律第4877號
	1995. 8. 4	法律第4959號
	1995. 12. 29	法律第5069號(教育法)
	1999. 2. 5	法律第5759號(農業基盤公社及農地管理基金法)
	1999. 2. 8	法律第5893號(河川法)
	1999. 8. 31	法律第6002號
	2000. 1. 12	法律第6115號

第1章 總 纜

第1節 總 則

第1條 (目的) 이 법은 地方自治團體의 종류와 그 註織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와의 基本的 관계를 정함으로써 地方自治行政의 民主性과 能率性을 도모하며 地方의 균형적 발전과 大韓民國의 民主的 발전을 기함을 그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89. 12. 30)

第2條 (地方自治團體의 종류) ①地方自治團體는 大別하여 다음의 2種으로 한다. <改正 94. 12. 20>

1. 特別市와 廣城市 및 道
2. 市와 郡 및 區

②地方自治團體인 區(이하 “自治區”라 한다)는 特別市와 廣城市的 管轄區域안의 區에 한하며, 自治區의 自治權의 범위는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郡과 다르게 할 수 있다. <改正 94. 12. 20>

③第1項의 地方自治團體의에 특정한 目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別途의 特別地方自治團體를 設置할 수 있다.

④特別地方自治團體의 設置·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條 (地方自治團體의 法人格 및 관할) ①地方自治團體는 法人으로 한다.

②特別市와 廣城市 및 道(이하 “市·道”라 한다)는 政府의 直轄下에 두고, 市는 道의 管轄區域안에, 郡은 廣城市 또는 道의 管轄區域안에 두며, 自治區는 特別市

(주 116)

第10編 地方制度 第2章 地方自治 地方自治法

②地方議會議員은 당해 地方自治團體 및 公共團體와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去來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施設 또는 財產의 讓受人 또는 管理인이 될 수 없다.

第34條 (議員의義務) ①地方議會議員은 公共의 이익을 우선하여 良心에 따라 그職務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地方議會議員은 清廉의義務를 지며, 議員으로서의 品位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地方議會議員은 그 地位를 滥用하여 地方自治團體·公共團體 또는 企業體와의契約이나 그 處分에 의하여 財產上의 權利·이익 또는 職位를 취득하거나 他人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第34條의2 (議員逮捕 및 確定判決의 통지) ①逮捕 또는 拘禁된 地方議會議員이 있을 때에는 관계搜查機關의 長은 지체없이 議長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4·3·16>

②地方議會議員이 刑事事件으로 公訴가 제기되어 그 判決이 확정된 때에는 각급法院長은 지체없이 당해 議長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新設 99·8·31>

[本條新設 91·12·31]

第3節 權限

第35條 (地方議會의 議決事項) ①地方議會는 다음 사항을 議決한다. <改正 94·3·16, 99·8·31>

1. 條例의 制定 및 改廢

2. 豐算의 審議· 확정

3. 決算의 승인

4. 法令에 規定된 것을 제외한 使用料·手數料·分擔金·地方稅 또는 加入金의賦課와 徵收

5. 基金의 設置· 運用

6.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重要財產의 취득·처분

7.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公共施設의 設置·처분

8. 法令과 條例에 規定된 것을 제외한 豐算의 (義務負擔이나 權利의 포기

9. 請願의 受理와 처리

10. 外國 地方自治團體와의 交流協力에 관한 사항

11. 기타 法令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사항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의 안

- 의안번호 : 제224호
- 의 안 명 : 소백산풍기온천장및부대시설증축을위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 해당부서 : 도시교통과

2. 제안이유

온천장 증축과 부대시설을 신축하여 온천장을 찾는 입욕객들에게 편의와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위 치 : 소백산풍기온천장 지내
- 건축규모 : 588m² (기존 1,160m²)
 - [증축] : 온천장 198m² - 오픈된 온천탕 진입복도 유리덮개 설치
 - [신축] : 부대시설 390m² - 별도 조립식판넬 단층 시공
 - 사무실, 식당, 특판장, 야외화장실, 휴게실
- 사 업 비 : 250백만원(2001예산 150백만원, 2002예산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1. 12 ~ 2002. 2

4. 검토의견

소백산풍기온천장및부대시설증축을위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검토한 바,

- 증축부분은 당초 복도겸 통로로 사용키 위해 오픈된 부분을 유리로 복개하여 대기실겸 통로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축법 제규정상 가능하고 건물의 효용성 증진과 확장 효과가 있으며

- 신축 계획인 부대시설도 설치내용이 온천욕장을 찾는 방문객과 종사원들의 편의도모와 휴식을 위해서는 필수시설로 판단되며 “소백산풍기온천장의 우수성 홍보와 유인 확대를 위해서는 타 온천장과 차별화되게 부대시설물을 설치함이 타당하므로 가결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2001. 11.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영 수